의 안 번 호	2478	【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】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2.(목) 안영호 의원 외 5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사업 대상지의 시설 유지관리, 주민역량 강화, 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○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(안 제5조)

○ 재정지원(안 제6조)

○ 지도·감독(안 제7조)

다. 근거법규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, 제3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○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'마중물 사업'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함

○ 중구에도 학성동, 중앙동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고 태화동은 진행 중이지만 사업완료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도시재생협의체 등 주민조직이 와해되고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방치되어 지역이 다시 쇠퇴 할 우려가 있음

○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도시재생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 하며,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○ 상위법인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책 추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

○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 ~ 6의3 (생략)

7. “도시재생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

1)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
2)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
3)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·사회적·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

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
5)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
6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
7)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
8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
9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 시설사업 및 시범도시(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) 지정에 따른 사업

10)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

11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

1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
1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

14)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나.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(이하 “혁신지구재생사업”이라 한다)

다.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(이하 “도시재생 인정사업”이라 한다)

8 ~ 12 (생략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·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